

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

□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!

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
김 상 진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

□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

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성을 강화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관·관리되고 있는 시민들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시장에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대책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

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, 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